2021년 중부청 해양환경관리 모범선박 선정 계획

해양오염예방을 성실히 수행하는 선박에 대해 모범선박으로 선정하여 선박종사자의 해양환경보전 의식 증진

□ 모범선박 지정기준

| 대 상 | 선정기준 |
|--|---|
| 대한민국 선박 50톤이상 유조선 (유해액체물질운반선 포함) | 1. 최근 5년이내 해양환경관리법을 위반하지 않은 선박 2. 해양환경관리 모범선박 선정평가표에서 평가치를 80%이상 획득한 선박 |
| 200톤이상 일반선박 | 3. 해양경찰서에서 추천한 선박 |

□ 모범선박 우대혜택

- O 선정일 다음연도부터 3년간 출입검사 면제
 - *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시 우대혜택 취소
- O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하는 경우 1/2 감경(1회 한정)
- O 모범선박 상패 및 부상품 지급
 - * 선정된 선박 관할 해경서 주관 상패 수여식 개최

□ 선정계획

- (대 상) 대한민국 선박 50톤 이상 유조선(유해액체물질운반선 포함), 200톤이상 일반 선박 * 공공기관 선박 및 부선 제외
- (선정방법) 지방청 주관 위원회를 통한 평가·심사
- (포 상) 모범선박 상패 수여 및 부상품 지급
- (추진일정)

□ 모범선박 평가·심사

○ (평가절차)

대상자 신청·접수 의 명가표 취합 명가 위원회 명가·심사 개최 명가·심사

- (평가방법)
 - 지방청 주관 평가위원회 개최, 모범선박 선정
 - * 선정기준 충족여부, 오염신고 및 해난사고 지원 선행 선박 가점 부여 등 종합 검토